

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내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임시특별회계 설치·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
-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한 실적이 없고, 향후에도 설치·운용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조례 폐지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8. 8. ~ 8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평창군 공고 제2024-1161호, 도시과-4984(2024. 8. 8.)호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2299(2024. 8. 6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2299(2024. 8. 6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대상 아님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4083(2024. 9. 6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**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
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**

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
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4. 5. 17.]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 - 2470